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18483
결재일자	2015.11.10.
공개여부	부분공개

주무관	식품안전담당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	
김현식	양명렬	김근선	11/10 황원숙		
협 조					

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(2015년)

2015. 11.

성북구보건소
보건위생과

식품제조·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계획

I. 목 적

관내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위생등급에 따라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업소를 효율적으로 분류, 관리하고 업소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II. 근 거

- 2015년도 성북구 가공식품 안전 업무 계획(보건위생과 -962(2015.01.19.)호)
- 2015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(식품의약품안전처) 중 식품제조·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등급제운영지침

III. 기 간

- 2015. 12. 14(월) ~ 12. 24(목)

IV. 대상업소: 식품제조·가공업소 19개소

- 신규평가(최초평가): 영업 활동을 개시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업소
- 정기평가(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실시): 2013년 평가업소
- 재평가: 행정처분(품목제조정지) 업소 및 영업자 지위승계, 장기생산 중단(휴업) 업소 등

총업소수 (식품제조· 가공업소)	위생등급평가 대상업소(2015년)				2014년 위생등급 평가업소	영업활동개시 1년 미만 업소
	소계	정기평가	신규평가	재평가 (중점관리, 휴업)		
49	19	10	9	-	29	8

※ 2013년 평가 실시(정기평가) 업소 17개소 중 6개소(-) 폐업(전출) 및 2015년 신규평가 업소 10개소 중 3개소(-) 폐업(1년~2년 사이 폐업), 2015년 타 시(구)에서 우리 구 전입업소 2개소(+) [19+29+8-6-3+2=49]

V. 등급평가자

- 위생관리등급 평가자 자격: 소속 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법 제32조(식품위생감시원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(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)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
- 평가자: 보건위생과 보건7급 김현식, 보건6급 양맹렬

VI. 세부계획

- 위생관리 등급 평가 사전 안내
 - 2015. 11. 11.: 방문 일정 안내 공문 발송
 - 12. 7. ~ 12. 11.: 대상 업소에 전화 연락 후 평가(방문) 일자 조정
- 평가의 절차
 -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(식품위생감시원증)를 제시
 -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생관리등급평가의 취지, 평가계획 및 범위,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
 - 평가자는 위생관리평가표의 기본조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재
- 평가의 실시 및 확인
 - 평가자가 위생관리평가표에 의거 평가대상업소의 서류, 시설·설비의 확인 및 업주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

구 분	항목수	평가배점	내 용
계	120항목	200점	-
기본조사 항목	45항목	-	업체현황 및 규모, 종업원 수, 위생관리 책임자, 식품의 종류, 생산능력 등
기본관리 평가항목	47항목	114점	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(서류평가, 환경 및 시설평가)
우수관리 평가항목	28항목	86점	식품위생법령의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

※ 첨부된 위생관리평가표(붙임 2) 참조

- 업소 내에서 상기항목과 같은 평가를 마친 후 대상업소의 영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, 평가결과가 작성·기록된 위생관리표를 확인하도록 함

○ 평가 결과의 처리

- 평가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프로그램에 평가한 업소의 평가결과 입력
- 식품제조·가공업소를 평가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, 일반관리업소 및 중점관리업소로 구분

• 자율관리업체 (평가점수 151~200점)	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
• 일반관리업체 (평가점수 90~150점)	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
• 중점관리업체 (평가점수 0~89점)	시설 및 위생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체

○ 평가 결과의 활용

- 식품제조·가공업소에 대한 출입·검사를 함에 있어 위생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위생관리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업소 관리
-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는 식품제조·가공업소 출입·검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(대외 비공개)

▶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위생관리별로 출입검사 등 차등관리 ◀

- ☞ 자율관리업체 :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**2년간** 법 제22조에 의한 **출입·검사 면제**
- ☞ 일반관리업체 :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에 의한 **출입검사 실시**
- ☞ **중점관리업체** : 매년 **1회 이상 지도·관리를 실시**하는 등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·검사 중점적 실시

VII. 행정사항

○ 평가 결과의 보고

- 평가 완료 후 평가대상업소수, 평가업소수, 평가업소명, 평가업소의 평가점수 및 위생관리등급 분류결과를 서울특별시로 분기보고 시 제출

○ 평가 결과의 통지

- 위생관리 평가결과(자율관리업체, 일반관리업체, 중점관리업체)를 평가 완료 후 15일 내에 평가 대상업체로 통보

- 붙임 1. 위생관리등급 평가대상업소 명단 1부
2. 위생관리평가표 1부. 끝.